

양도소득세

# 예금 및 채권관련 세금 검토

글 | 정태화 세무사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이자에는 세금이 뒤따르게 된다. 예금의 이자와 채권의 이자는 동일한 이자소득으로 본다.

## 가. 개인소득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방법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 중 개인소득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다.

### (1) 개인거주자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면 된다. 이후 소득자별로 1년 동안의 세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된다.

### (2) 개인 비거주자

①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관계 :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한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동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관련성이 없거나 국내사업장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써 모든 과세관계를 종결한다. 이때 원천징수는 조세협약체결국가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일본 : 10%, 미국 12% 등)로 원천징수하며, 조세협약 비체결국가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최고세율 25%(주민세 2.5%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이자소득 중 국가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차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007년 이후부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4%(주민세 1.4%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②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관계 : 국내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다.

## 나. 법인 소득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방법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 중 법인소득자는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다시 금융업법인과 비 금융업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가 영리법인이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 이자는 금융기관의 사업목적에 의한 영업수익(매출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개인	거주자	일반금융이자	4천만원 초과	15.4%(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4천만원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비거주자	비영업대금이익	27.5%(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후 일반금융이자와 동일하게 4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법인	국내사업장 유	실질관련성 유	조세조약 유 → 제한세율
			실질관련성 무	조세조약 무 → 분리과세
		국내사업장 무	분리과세	27.5% 또는 15.4% (주민세 포함)
		금융업법인	일반금융이자	원천징수하지 않음
	영리법인	비 금융업법인	채권이자	14% 원천징수
			일반금융이자	14% 원천징수
			채권이자	14%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이자		25% 원천징수
	비영리법인	비 금융업법인과 동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

채 등의 채권과 관련된 이자는 투자활동에 따른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자(국가 또는 법인)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14%(주민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음)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영리일반 법인이라면 예금의 이자건 채권의 이자건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14%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일반 영리법인이 타 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최고 세율인 25%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당하나,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를 통하여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동 환급세액을 사용할 수 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업영대금의 이익이란 대외적으로 대금업임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 간에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도 해당된다.

#### 다. 이자소득 과세방법 요약

이상과 같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위의 도표와 같다.

상기 도표 중 비거주자에 대한 사항은 조세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득세법의 내용을 반영하면 국내사업과 실질 관련성이 있는 금융소득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4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